

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8. 19. 박기석 의원외 6인
나. 회부일자 : 2008. 8. 21.
다. 상정일자 : 2008. 8. 28.(제1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박기석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완공 전에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나. 주요내용

- 편의시설 설계도면 점검(안 제3조)
 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설계도면 점검.
- 편의시설 설치 검사(안 제4조)
 : 준공검사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 점검
- 사전점검 대상 시설(안 제5조)
 :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중 제천시가 설치하는 시설.

○ 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(안 제6조)

- 점검 시기 : 대상 시설의 협의, 시공 및 준공 전
-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이 참여

○ 구성(안 제7조)

- 점검요원(5명 이내)
 - : 임명직 : 2명(건축 인허가 담당 1명, 장애인편의시설지도 감독담당 1명)
 - : 위촉직 : 장애인 단체와 제천시 건축사회, 장애인 등의 편의 시설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학계 등
- 임기 : 2년(연임가능)

○ 점검요원의 직무(안 제8조)

- 편의시설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, 점검 및 확인

○ 점검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(안 제11조)

-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

○ 점검 결과의 반영(안 제12조)

- 시장은 제출받은 점검결과보고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석윤)

【 법적 검토 】

- 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.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조제3호에 대상시설로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법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.

- 본 조례안은 박기석의원님 외 6인의 명의로 발의되어 집행부 관계 팀의 의견을 청취하였음.

【 행정적 검토 】

- 본 조례안은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준공 전에 장애우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설계도면을 점검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검사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적합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- 조례안 제6조 사전점검 시기는 대상 시설의 협의, 시공 및 준공전에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 참여하여 점검도록 한 것은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됨.
- 조례안 제7조 점검요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임명직으로서 공무원 2명 위촉직으로서 관련 단체의 요원 및 전문가 3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바 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.
- 조례안 제11조, 제12조에 점검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 형식적인 점검을 방지하고 점검결과보고의 내용을 적극 반영도록 한 것은 장애우 등의 편의증진을 높일 것으로 사료됨.
- 본 조례안과 관련한 관계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
 - 조례안 제6조 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사전점검은 건축 과에서 통보를 받은 후 합동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요망하였음.

4. 질의답변 요지

“없음”

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
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